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2025 법인세 신고 안내



CONTENTS

01. 신고지원 방향

02. 신고도움서비스

03. 신고내용확인 사례

I. 신고지원 방향

- 01. 신고·납부 안내
- 02. 세정지원 안내
- 03. 중소기업 신고편의 제공
- 04. 공익법인 협력의무
- 05. 공제·감면 안내
- 06.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 0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I. 신고지원 방향

01. 신고·납부 안내

신고·납부 기한

■ 일반법인

- '24.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3.31.(월) 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및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전환내국법인)
 - 위 전환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사업 양수도의 방식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 법인
- ⇒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

4.30.(수) 까지

I. 신고지원 방향

01. 신고·납부 안내

전자신고①

■ 국세청 홈택스에서 3.1.(토)부터 전자신고 가능

- 이용시간 : (신고) 06:00~24:00, (납부) 07:00~ 23:30

[세금신고] → [법인세신고]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 [전송] → [접수증 확인]

- 영업실적 및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신고의무 있음)은 간편 전자신고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

12월 결산법인에만 제공되었던 간편신고 서비스를 '25년부터는 기타월 결산법인에도 제공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간이서식에 의해 신고 가능
- 결산서류 등 부속서류 전자 제출 : [세금신고] → [법인세신고] → [신고부속·증빙서류제출]

I. 신고지원 방향

01. 신고·납부 안내

전자신고②

✓ '24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 첨부서류 분할 제출 안내

- ①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② 결산서(결산보고서 및 부속 명세서)
- ③ 재무상태표 등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 첨부서류 제출 안내

□ 제출 방법

①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②결산서(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③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현금흐름표(감사보고서로 갈음 가능)를 아래 예시와 같이 첨부서류별로 분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예시

- (첨부1) 24년 귀속 000(주)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첨부2) 24년 귀속 000(주) '결산보고서'
- (첨부3) 24년 귀속 000(주) '감사보고서'

▶ 접속경로 : 세금신고 - 법인세신고 - 정기신고 -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확인하였습니다

닫기

하루동안 열지 않음

I. 신고지원 방향

01. 신고·납부 안내

납부방법

■ 간편결제 또는 신용카드 납부

- ①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② [금융결제원] → [지로업무] → [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 ③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④ 은행 CD/ATM을 이용하여 신용(체크)카드 납부

■ 계좌이체

-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19자리, 0126으로 시작)이용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 인터넷 은행(토스뱅크, K뱅크), 증권사 계좌 이용 불가

✓ 농어촌특별세 납부 시 법인세와 구분 기재 납부

I. 신고지원 방향

01. 신고·납부 안내

분납기한

-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제외)이 **1천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25.4.30.), 중소기업은 2개월('25.6.2.)이내에 **분납 가능**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50%이하의 금액

▪ **농어촌특별세 분납할 세액**

- ✓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납부
- ✓ 법인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농특세가 500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 농특세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농특세가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농특세의 50%이하의 금액

1. 신고지원 방향

02. 세정지원 안내

수출중소기업 세정지원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유동성 지원을 1년 연장하고 제주항공 사고피해 기업에게도 동일한 세정지원 실시

수출 중소기업

- 수출액 비중 50% 이상 법인
- 관세청·무역협회·코트라 선정 기업

✓ **수출의 범위**

(당초) 직수출

(확대) 직수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제주항공 사고피해

- 여객기 사고 피해자
- 특별재난지역(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 **지원대상**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법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총 2,193개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환급신청액 10일내 조기 지급

I. 신고지원 방향

03. 중소기업 신고편의 제공

전용 상담창구·상담팀 운영

■ (세무서) 중소기업 전용 상담팀 운영

- 상담팀장과 법인별 안내담당이 신고 도움자료 항목을 설명하고 신고반영 방법 등을 안내
-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방청 상담팀이 지원

■ (지방청) 공제·감면 상담팀 운영

- 「법인세 공제·감면 전담팀」에서 중소기업의 세법 문의에 대응 및 세무서의 상담업무 지원
- 중소기업이 반복적으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신고 도움자료로 안내

■ (본청·지방청) 세무상담 핫라인 운영

-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 지원단」, 「노란우산 경영지원단」과 본·지방청에 핫라인 개설하여 상담 서비스 제공

- ✓ 본청 법인세과 법인 4팀, 지방청 법인세과 공제·감면 담당

I. 신고지원 방향

04. 공익법인 협력의무

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

의무이행 대상

3월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월

-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
- 자산 5억원 또는 수입+출연재산 3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 수입+출연재산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

6월

- 모든 공익법인(종교 제외)
- 주식기준 초과보유 공익법인)
- 기재부 지정 기부금단체
당연지정 기부금단체(종교제외)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주요 납세협력의무

-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

-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

- 결산서류 등 공시

- 주식보유 관련 의무 이행 여부 신고

-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I. 신고지원 방향

05. 공제·감면 안내

안내용 PPT

✔ 쉽고 간단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5가지 분류로 안내

<p>CONTE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고용 지원 II 투자촉진지원 III 중소기업 지원 IV 연구·인력개발 지원 V 기타 지원 	<h3>I 고용 지원</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0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4) 통합고용세액공제 	<h3>II 투자촉진지원</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 통합투자세액공제 0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h3>III 중소기업 지원</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 중소기업의 범위 02) 중소기업관련 주요 공제·감면제도 0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0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0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h3>IV 연구·인력개발 지원</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0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0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h3>V 기타지원</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0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0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04)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05)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접근 경로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신고 시 유의사항]

I. 신고지원 방향

05. 공제·감면 안내

안내용 슷폼 (10편)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동영상자료실]
[국세청 공식 ] → [세상,만세稅 ]



I. 신고지원 방향

06.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누구나 신청 가능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절차 및 주요 내용】



컨설팅 신청대상

- 모든 중소기업
- 고용·투자 등의 의사결정 및 거래 개시
- 경정청구 사유

컨설팅 신청방법

- 사유발생한 날의 다음 날 이후 경정청구 신청 전까지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홈택스, 우편·방문 신청(지방청)

컨설팅 제공

- 공제·감면 가능 항목 등 제공
-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결과 안내

컨설팅 혜택

-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제외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I. 신고지원 방향

0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운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운영

도입 배경



R&D 세액공제는 조세절감 효과가 크나,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 이견 발생



세무조사 등으로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 + 가산세) 추징 ⇒ 납세자의 부담 가중

'20년부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사전심사제도’ 도입·시행

- ✓ (우선처리 대상 확대) 밸류업 표창 중소기업 및 국가전략기술 심사 신청 기업 우선처리(3종류 ⇒ 5종류)
- ✓ (신청 경로) 홈택스([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또는 우편, 세무서 방문접수

II. 신고도움서비스

01. 화면안내

02. 주요 개선 사항

03. 주요 안내 항목

04. 자기검증 검토서식

05. 오류검증 항목

II. 신고도움서비스

01. 화면 안내

화면안내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개별 안내자료, 최근 신고상황,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종합적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니 법인세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바로가기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자료
(동영상·PPT) 바로가기

※ 접근경로 : 세금신고>법인세 신고>신고도움 서비스

※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화면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더이상 보지 않기



접근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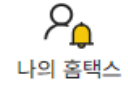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II. 신고도움서비스

01. 화면 안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계산서·영수증·카드

증명·등록·신청

① 세금신고

납부·고지·환급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상담·불복·제보

세무대리·납세관리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② 법인세 신고

원천세 신고

개별소비세 신고

인지세 신고

주세 신고

증권거래세 신고

종합부동산세 신고

교육세 신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법인세 신고

정기신고

중간예납신고

③ 신고도움 서비스

중간예납 세액 조회

신고도움 자료 조회

II. 신고도움서비스

01. 화면 안내

신고 도움 서비스

✔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6개의 주제별로 분류하고 탭(Tab)형태 구성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주제별 탭(Tab)	제공 자료				
주요안내	①주요지표 분석 ②주요안내사항(신고시 유의사항 · 절세 도움말 중 우선 안내항목)				
기업 분석자료 (~23년 신고 분석자료)	①법인 기본사항 ②연도별 신고상황 ③주요 공제·감면 현황 ④기업 분석자료(판매관리비·지출증빙수취 현황)				
신고 참고자료 (24년 자료)	①중간예납세액 ②부가가치세 신고자료 ③원천세 신고자료 ④국고보조금 수취내역 ⑤특정 용도의 신용카드 사용현황 ⑥주주현황 ⑦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안내				
신고시 유의사항	①법인별 유의사항 ②업종별 유의사항 ③계정과목별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①핵심 절세 도움말 ②법인별 절세 도움말 ③업종별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①참고할 세법규정 ②주요 개정 세법				

II. 신고도움서비스

01. 화면 안내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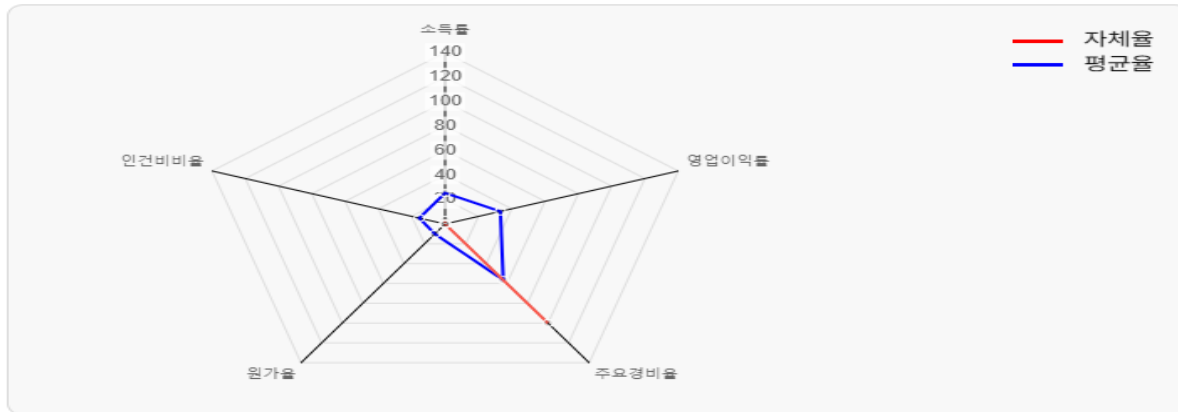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2022사업연도 주요 지표 비교분석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요안내 출력



주요지표	자체율(%)	평균율(%)
소득률	3.3	25.3
영업이익률	-74.7	33.2
주요경비율 (판매비와 관리비)	174.7	56.5
원가율	0	10
인건비비율	0	15.5

<종합분석> 소득률과 영업이익률이 동종업종 평균보다 낮은 반면, 주요 경비율은 동종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되는지 점검해보세요

*평균율은 동종업종 영위 법인 중 수입금액 10~30억원 구간 법인의 평균입니다

이건 꼭 알아두세요!

<신고 시 유의사항>

더보기

특정 항목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 법인의 신고 시 유의사항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확인 시 추정되는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귀 법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중 이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려드리니 업무 관련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신변잡화 구입 추정액 : 9백만원
2. 가정용품 구입 추정액 : 14백만원
3. 업무무관업소 이용 추정액 : 98백만원
4. 개인적 치료 추정 비용 : 0백만원
5. 해외사용액 : 0백만원

II. 신고도움서비스

01. 화면 안내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	----------------	---------	-----------	-------	-------

1. 기업 분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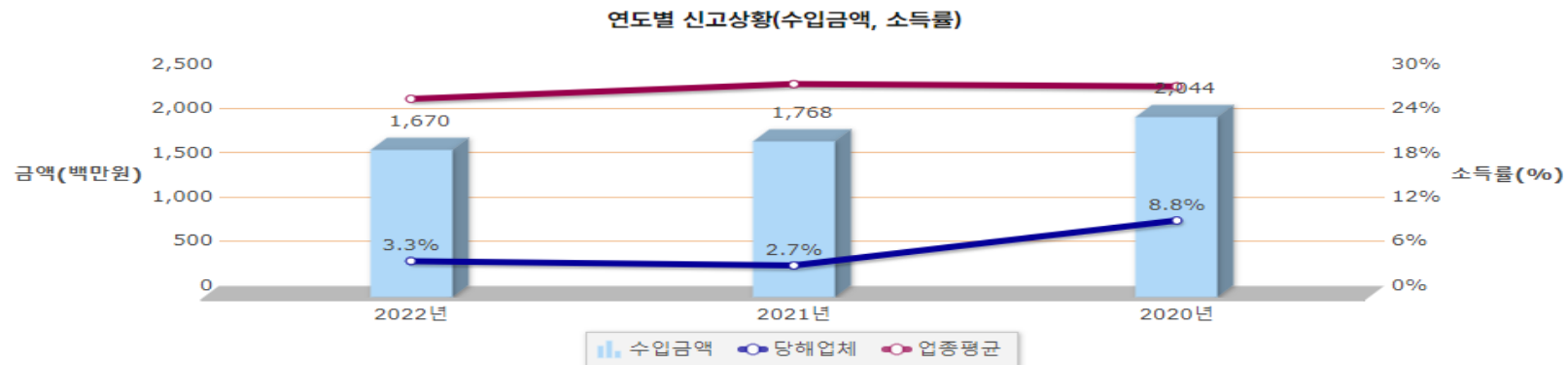
기업 분석자료 출력

1. 법인 기본사항

법인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대표자	이***	비영리법인
법인구분	내국법인	사업연도	2023.01.01 ~ 2023.12.31	
법인종류	비영리 그외 일반법인			
업태	부동산업	주업종코드	701201	
세금포인트	18.00	종목	부동산 임대업	

※ 전년도에 신고한 기본사항입니다. 주업종코드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도별 신고상황



II.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참고자료

II. 신고 참고자료

신고 참고자료 출력

1. 2023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원(원단위 절사)

※ 가산세 제외 금액으로 기한후 신고, 결정·결정내역이 반영된 자료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자료(2023년)

> (1)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과세	면세	과세	면세
2024.1기	844	233,872	93,175	900
2024.2기	726	12,428	140,935	1,341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으로 수정신고, 고지 등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등

(단위 : 백만원)

기간	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금액 (공급대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공급대가)
2023년	2,512	1,503	820	189

※ 위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매출액보다 큰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신용카드결제대행금액 + 선불전자지급금액(구매전용카드 제외)

3. 원천세 신고자료(2023년 귀속)

(단위 : 명, 원)

합계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인원	3,318	0	0	1,296
총지급액	19,809,623,192	0	0	453,667,944

※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제출내역으로 수정신고, 고지 등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 지급인원, 총지급액은 2023년 귀속 기준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A01), 일용근로(A03)], 사업소득[매월징수(A25)], 기타소득[그 외(A42)] 코드의 합계액입니다.

II. 신고도움서비스

01. 화면 안내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	---------	---------	------------------	-------	-------

III.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시 유의사항 출력

• 1. 법인별 유의사항

(단위 : 백만원, 건, 명, %)

안내사항	안내 내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사용하는 법인	<p>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자(비영업대금이익 제외)·배당소득의 경우 100%, 그 밖의 수익사업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의 50%(80%, 100%)에 대해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p> <p>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자산을 취득하는 등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사유발생일에 익금산입 하여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 5년이 되는 날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니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설정년도 및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p> <p>○ 2022사업연도 손금산입액계 : 236백만원</p>

• 2. 업종별 유의사항

안내사항	안내 내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고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등록사업자, 종교단체 등에 임대한 경우 임대료 수입금액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 -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비용을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 실제 근무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을 계상하지 않았는지 여부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기재된 주업종코드에 의함.

• 3. 계정과목별 유의사항

계정과목명	안내 내용
-------	-------

II. 신고도움서비스

01. 화면 안내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	---------	---------	-----------	-------	-------

○ IV. 절세도움말

절세도움말 출력

• 1. 법인별 절세도움말

일괄 상세보기 +

안내사항	안내 내용	
상가임대료를 인정한 법인의 세액공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2020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정한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인세에서 공제됨을 알려드리니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안내	중소·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임원, 최대주주,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등 제외) 수가 2022사업연도에 비해 2023 사업연도가 증가하거나 같은 경우 일정한 요건(2023사업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등) 충족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에 대한 안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공제·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 창업 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② 중소기업 유지 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에 감면율 우대 안내	중소기업이 제조업 등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기업규모가 작은 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비해 감면율을 우대하여 적용하므로 감면 요건을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상세보기

상세보기

상세보기

※ 절세도움말을 신고에 반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검토하여 적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제도 안내 (<https://www.nts.go.kr/>)

• 2. 업종별 절세도움말

일괄 상세보기 +

안내사항	안내 내용
------	-------

II. 신고도움서비스

01. 화면 안내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	---------	---------	-----------	-------	-------

○ V. 세법도우미

세법도우미 출력

• 1. 참고할 세법규정

안내사항	안내 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29)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료를 인정한 법인의 세액공제 안내(조세특례제한법 §96의3)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하여 지급받은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조세특례제한법 §29의4)	상시 근로자(임원, 최대주주,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등 제외)의 '22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22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21과세연도에 비해 크거나 같은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우대(조세특례제한법 §7)	중소기업이 제조업 등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기업규모가 작은 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기업에 비해 감면율을 우대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 : 중기업(5~15%) 소기업(10~30%)

• 2. 주요 개정세법

안내사항	안내 내용
------	-------

※ 세법도우미를 신고에 반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령 및 해석사례 등의 원본을 검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II. 신고도움서비스

02. 주요 개선 사항

신고도움자료 정교화

✓ 부동산(양도일자, 소재지)과 유가증권 양수내역(주식발행법인상호, 주식수)의 구체적인 거래내역 안내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	---------	---------	-----------	-------	-------

III.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시 유의사항 출력

토지를 양도한 법인의 신고 시 유의사항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오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일자 : 0000.00.00., 소재지 : 00도 00시 00구 00번지

2. 양도일자 : 0000.00.00., 소재지 : 00도 00시 00구 00번지

※ 최대 5개의 부동산 양도내역을 안내

II. 신고도움서비스

02. 주요 개선 사항

전자신고 개선

✓ 어려운 세법용어 쉽게 설명하는 도움말 10종 추가('24년 30종 → '25년 40종)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세액조정계산서 입력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단위: 원)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0	108.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0
113. 과세표준 ?	56	0	114. 세율	0
115. 산출세액	12	0		

기납부세액

126. 중간예납세액 ?	22	0		
127. 수시부과세액 ?	23	0		
128. 원천납부세액	24	0		
129.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25	0		
130. 소계(126+127+128+129)	26	0		
131. 신고납부전 가산세액	27	0		
132. 합계(130+131)	28	0		
134. 차감 납부할 세액(115-132)	30	0		

① 커서 이동

② 도움말 생성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기업회계 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하여 계산함

- 세법 용어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용어 설명창이 생성
- 무실적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의 도움말 서비스 확대 제공

II. 신고도움서비스

02. 주요 개선 사항

신고편의 제공

✓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 게시

고용증대세액공제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 청년 범위: 15~29세

사회보험료세액공제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 고용증가인원(2년)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경력단절여성 100%)

* 청년 범위: 15~29세

통합고용세액공제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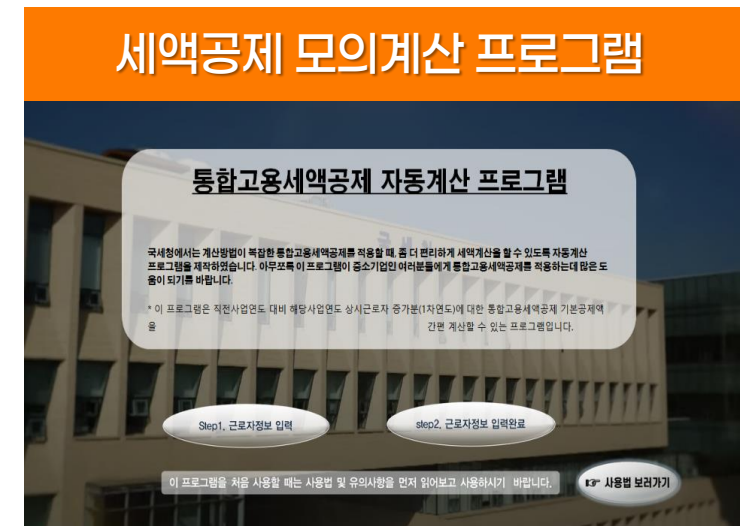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 청년 범위: 15~34세

VS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



II. 신고도움서비스

02. 주요 개선 사항

오류검증 서비스

✓ 수정이 필요한 항목(오류)과 검토참고 항목(경고,안내)으로 구분

메시지유형에 따른 신고서 제출 가능 여부 안내

- 오류 : 신고서 제출 불가능(신고서 내 반드시 수정해야할 오류 존재)
- 경고, 안내 : 신고서 제출가능(신고서 내 재확인 필요한 부분 존재)
- 오류내역의 메시지유형에 따라 오류는 최대 101건, 경고 및 안내는 최대 100건까지 표시됩니다.
- '25년 오류 항목 19개, 경고·안내 항목 26개, 총 45개(+3개)

✓ (예시) 오류 내역

서식명	메시지유형	항목명	내용검증 오류내역
소득공제신청서	오류	실제배당금액	(15)실제배당액(50)은 (16)소득공제 해당 여부가 여(Y)인 경우, [3. 소득공제액의 이월] 당해연도 (20)사업연도(20241231)의 (21)당기분 공제가능 금액(100)과 같아야 합니다.

II. 신고도움서비스

03. 주요 안내 항목

주요 안내 항목

- 빅데이터·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분석한 유형별·업종별 개별분석자료를 최대한 제공
- 1인 주주 법인 등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법인이 자주 잘못 신고하는 사례 안내
-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혜택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도움말’ 확대 안내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현황

구분	제공현황	
개 별 분 석 자 료	('24년) 64개 유형 → ('25년) 67개 유형	+3
공 통 분 석 자 료	('24년) 51개 유형 → ('25년) 56개 유형	+5
업 종 별 유 의 사 항	('24년) 136개 유형 → ('25년) 139개 유형	+3
계정과목별 유의사항	('24년) 38개 유형 → ('25년) 40개 유형	+2
절 세 도 움 말	('24년) 37개 유형 → ('25년) 40개 유형	+3
세 법 도 우 미	('24년) 88개 유형 → ('25년) 88개 유형	+0

II. 신고도움서비스

03. 주요 안내 항목

개별분석 항목①

순번	개별분석항목	순번	개별분석항목
1	고가의 회원권·레저용 선박을 보유 중인 법인	13	법인카드 사적사용 혐의가 있는 법인
2	주택을 특수관계인이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	14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
3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계약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	15	'24사업연도 중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취득한 법인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16	주택 등을 양도한 법인
5	사업연도 1년 미만인 사업자 과세표준 환산	17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법인
6	'24사업연도에 주식을 취득한 법인	18	이자배당사용 등 국외원천소득 수취 법인
7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착오 적용 법인(수도권 밖 소재 중소기업)	19	서화·골동품을 매입한 법인
8	미환류소득 계산 시 임금증가액 가중치 착오 적용 법인	20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법인
9	특정 항목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 법인	21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
10	지출증명서류를 과소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	22	의제매입세액 등을 공제받은 법인
11	상품권을 매입한 법인	23	종부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보유법인
12	소송비용을 계상한 법인	24	국고보조금 또는 정부출연금을 받은 법인

II. 신고도움서비스

03. 주요 안내 항목

개별분석 항목②

순번	개별분석항목	순번	개별분석항목
25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영위법인	37	지분을 10% 초과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2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사용하는 법인	38	고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지출하는 법인
27	코로나손실보상금을 수취한 법인에 대한 안내	39	임직원전용자동차험을 미가입한 법인
28	8천만원 이상인 차량을 취득한 법인	4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한 법인
29	유류비 구입에 법인카드를 과다 사용한 법인	41	부동산법인 등의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30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	42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와 거래내역이 있는 법인
31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매입한 법인	43	주주·지분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
32	용역수수료 과다계상 혐의가 있는 법인	44	건설자금이자의 당기 비용화 법인
33	국외특수관계인에 자금을 대여한 법인	45	법인세 추납액 등이 있는 법인
34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법인	46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있는 법인
3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한 법인	47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출한 법인
36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	48	주택을 보유한 법인

II. 신고도움서비스

03. 주요 안내 항목

개별분석 항목③

순번	개별분석항목	순번	개별분석항목
49	주택임대 법인 중 임대수입을 누락한 혐의 법인	61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
50	연구소·전담부가 없거나 취소된 법인	62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공제 후 고용 감소한 법인
51	부당하게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한 법인(감면기간 만료)	63	세액공제 이월액이 있는 법인
52	부당하게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한 법인(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64	중소기업 유예 적용 법인
53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한도 초과 법인	65	정부과제 수행 과정에서 민감부담금을 지출한 법인
54	해외 임가공 제조업체 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법인	66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법인
55	고객의 가수금을 장기보유 또는 일시 변제한 법인	67	지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연구개발특구 입주 법인
56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57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가 발생한 법인		
58	농업회사법인 감면소득 범위		
59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대상 법인		
60	가지급금을 자기주식 취득대금과 상계하는 법인		

II. 신고도움서비스

03. 주요 안내 항목

공통분석 항목①

순번	공통분석항목	순번	공통분석항목
1	합병법인	15	당기순이익과세법인
2	분할법인	16	세무조사 이후 신고소득률이 감소한 법인
3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17	고액 수선비를 계상한 법인
4	부동산을 양도한 비영리법인	18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법인
5	대손금을 손금 산입한 법인	19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6	유가증권평가손실이 있는 법인	20	계열사 간 용역거래를 하는 법인
7	감자 등의 대가를 수취한 법인	21	유동화전문회사등 소득공제
8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	22	광고선전비를 계상한 법인
9	기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23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처분한 법인
10	유보처분 금액이 있는 법인(유보잔액 차이발생)	24	건축물을 감가상각하는 법인
11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안내	25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에 대한 안내
12	R&D명세서, 부표 부실기재 또는 미제출 법인	26	특허권 등을 취득·대여한 법인
13	충당금(충당부채)를 설정한 법인	27	임원퇴직금을 지급한 법인
14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28	해외시장개척비 등을 계상한 법인

II. 신고도움서비스

03. 주요 안내 항목

공통분석 항목②

순번	공통분석항목	순번	공통분석항목
29	가지급금 회수금액 과다 계상한 법인	4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법인의 신고 시 유의사항
30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	4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의 유의사항 안내
31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45	지역특구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32	세액감면 적용 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법인	4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시유의사항
33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법인(이동)	47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제출 안내
34	동일 고용에 대한 공제신청시 유의사항	48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내부거래 관련 자료 제출 안내
35	고객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는 법인	49	고용증가 법인이 고용증대 적용시 유의사항
36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매출채권 보유 법인	50	신고서 오류발생 오류 안내
37	R&D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이 유의할 사항	51	이월과세 부동산 양수법인의 사후관리 안내
38	R&D 사전심사 시 빈번하게 부적격 판정된 유형 안내	52	국내복귀기업 선정 취소 법인의 감면 적용 시 유의사항
39	겸직 연구원에 대한 R&D 세액공제 배제	53	외화평가손익을 계상한 법인
40	재료비 등에 대한 R&D 세액공제 유의할 사항	54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있는 법인
41	인력개발비에 대한 R&D 세액공제 유의할 사항	55	공유숙박업(551007)을 영위하는 법인의 유의사항
42	디지털플랫폼 분야 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56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4대 보험료

II. 신고도움서비스

03. 주요 안내 항목

계정과목별 안내①

순번	계정과목별 안내	순번	계정과목별 안내
1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에 반영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함	11	판매비와 관리비 중 접대비 관련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함	12	복리후생비 중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3	현지법인 대여금 등의 부당 대손처리, 채무 대위 변제액에 대한 채권 누락,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정상이자 미수취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13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4	특수관계인 대여금 등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조정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14	재료비 중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5	법인의 자산을 업무목적외 사용(사적사용 포함)하였는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함	15	지급수수료, 출장비 등 비용 중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6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정성 및 당기 손금처리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함	16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건설 등 기간 중 발생한 특정차입금 이자를 당기 비용처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7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함	17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지출한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액을 당기 손금처리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8	임원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18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9	적격증빙 수취 없이 비용처리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19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주주 등에 대한 인건비를 손금산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10	판매비와 관리비 중 업무무관비용이나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20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지급이자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II. 신고도움서비스

03. 주요 안내 항목

계정과목별 안내②

순번	계정과목별 안내	순번	계정과목별 안내
21	주식 고가취득, 후원금 등 비지정기부금 성격의 지출액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31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함
22	계열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ERP, 관리부서 등에서 발생하는 공동경비를 과다 부담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함	32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함
23	특수관계인 채권, 회수채권 등 총당금 설정제외 대상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33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24	임의포기채권, 대손시기 미도래채권 등이 대손금에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34	영업자가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의 회비를 손금산입했는지 확인이 필요함
25	작업진행률 계산 오류, 소송에 따른 채무 미확정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35	수선비 처리한 자본적지출액을 당기 감가상각비에 포함하여 한도계산하였는지 확인 필요
26	벌과금, 과태료 등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36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이월결손금 기준으로 공제액 계산 필요
27	현실적 퇴직에 포함되지 않는 임원 퇴직금, 과다 지급한 임원 급여 등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총당금이 과다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37	법인자금 유출을 위해 자기주식 취득 명목으로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는지 검토 필요
28	최근 1억원 이상 익금산입 등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함	38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 손금가능 범위 안에서 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 후 고유목적사업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였는지 검토 필요
29	매입원가를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 계상여부와 적격증빙을 통해 비용처리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함	39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차량운행 기록(단,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인정)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니 검토 필요
30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우리사주, 성과배분상여금, 벤처기업·상장법인·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스톡 옵션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함	40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법인의 경우 원가법과 시가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평가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세법상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확인 필요

II. 신고도움서비스

03. 주요 안내 항목

절세 도움말①

순번	법인별·업종별 절세 도움말	순번	법인별·업종별 절세 도움말
1	중소기업으로 추정되는 법인에 대한 안내	11	일반기부금을 지출한 사회적 기업
2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 법인	1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안내
3	인력개발비에 대한 R&D세액공제 범위 확대	13	농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4	중복공제 허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 (818)	14	농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5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	15	농업경영체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6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확대 안내	16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
7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법인	1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 OTT제작지
8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법인의 세액공제	18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안내
9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19	신성장·원천기술 R&D 활동을 하는 중소·중견법인
10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20	통합고용세액공제 안내

II. 신고도움서비스

03. 주요 안내 항목

절세 도움말②

순번	법인별·업종별 절세 도움말	순번	법인별·업종별 절세 도움말
21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31	지역특구감면 법인 감면한도 확대 안내
22	중견기업으로 추정되는 법인에 대한 안내	32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
23	소기업 적정 감면율 우대 적용 안내	33	특허권 등 대여소득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 법인
24	신성장서비스업 창업법인	34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중견·중소기업
25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한 법인의 세액공제	35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해당 법인
26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한 석유제품 공급법인 세제혜택 안내	36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
27	소형주택 임대기업 세제혜택 안내	37	상생결제를 활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법인
28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세제혜택 안내	38	상생협력기금 출연대상 기업 세제혜택 안내
29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업 세제혜택 안내	39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기업 세제혜택 안내
30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제혜택 안내	40	우수선화주 인증기업 세제혜택 안내

II. 신고도움서비스

04. 자기검증 서식

자기검증 검토서

☑ 법인세 신고 전 **실수하기 쉬운 세무조정과 공제·감면 적용가능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확인 가능



2025
법인세 신고안내

www.nts.go.kr | National Tax Service | 2025.2.



자기검증 검토서('24년 23개 → '25년 25개)

▪ 지출증명서류 수취	▪ 성실신고 확인제도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 외국납부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 중소기업 요건	▪ 최저한세 적용 여부
▪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기부금 세무조정
▪ 대손금 요건	▪ 창업중소기업 감면	▪ 통합고용세액공제
▪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	▪ R&D 세액공제	▪ 공제·감면 중복 여부(신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R&D 세액공제 인건비	▪ 부당행위계산 부인(신규)
▪ 이월결손금 공제	▪ R&D세액공제 위탁개발	
▪ 토지 등 양도소득	▪ 고용중대기업 세액공제	



접근 경로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참고자료실] 또는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II. 신고도움서비스

04. 자기검증 서식

검토서식①



동일 과세연도 공제·감면 중복여부 검토서식('25년 신규)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중복 적용 제외	• 아래의 ①세역감면과 ②세역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① 세역감면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역감면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역감면 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라.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사.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역감면 아.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역감면 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역감면 차.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카.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파.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역감면 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레.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베훈.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어.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예 아니오	② 세역공제 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역공제 나. 내국법인의 벤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다. 통합투자세역공제 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역공제 마. 고용창출투자세역공제 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역공제(①세역감면의 '나'와 중복 가능) 사.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역공제 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자.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차.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역공제 카. 금시업자와 스크램블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역공제 타. 금 한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예 아니오	

II. 신고도움서비스

04. 자기검증 서식

검토서식④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1. 계정과목별 신용카드 사적사용 여부 검토

(단위 : 원)

사용 내역			사적사용 여부 검토				적정 여부	
사용일자	계정과목	금 액	귀속자	사용 내용	금 액	사용구분		
2024.7.20	교통여비	2,300,000	대표자	국외출장	1,000,000	⑧	⑦	N
			대표자	면세점 지출	1,300,000	④	Y	
소 계								

* 사용구분

- ① 쇼핑물 구입 ② 신변집화 구입 ③ 가정용품 구입 ④ 업무무관 경비 지출
 ⑤ 개인적 치료 비용 ⑥ 공휴일 사용 ⑦ 기타 사유 ⑧ 업무관련(정상)

2. 상품권·기프트카드·선불카드 등 사용금액 적정 여부 검토

(단위 : 원)

사용 내역			수령자 검토					적정 여부	
사용일자	계정과목	금 액	수령자 소영가능	성 명	구 분	직 책	금 액		
2024.9.20.	백리후생비	1,000,000	가능	유상무	④	대리	1,000,000	Y	⑤
2024.10.2.	백리후생비	500,000	가능	이직원	②	인턴	500,000	⑦	N
소 계									

* 수령자 구분 항목

- ① 임원 ② 직원 ③ 주주 ④ 거래처 ⑤ 고객 ⑥ 기타

II. 신고도움서비스

04. 자기검증 서식

검토서식⑤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 차 대조표 등 계상연환	•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선급금, 선급수수료 등 타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차입금을 표준대차대조표상 선수금, 예수금 등 타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지급이자를 표준손익계산서상 임차료, 지급수수료 등 타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손 금 불산입 대 상 지급이자	• 업무무관부동산 등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상 지급이자에 아래 지급 이자가 포함 되었는지 여부 - 금융여유 할인료, 미지급이자,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사채할인 발행차금 상각액, 전항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0-2 참조	예	아니오
	•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 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업무무관 가지급금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 하였는지 여부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참조	예	아니오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업무무관 부 동 산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경과한 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유예기간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도한 부동산을 '업무 무관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	예	아니오
업무무관 통 산	• 장식·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있는 서화·공동품을 '업무무관통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선박·항공기를 '업무무관통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II. 신고도움서비스

04. 자기검증 서식

검토서식⑥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① 업무용 승용차 범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령819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어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자동차 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예 / 아니오	⑥ 감가상각비 (상 당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 적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5년 장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하였는지 - 리스차량 : 리스로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 - 렌트차량 : 렌트료의 70%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 계산 적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유효계산 여부 - 해당 사업연도 1년 미만 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법령842② 규정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② 관련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적정한지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예 / 아니오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적정여부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③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 일부기간 가입 : 가입일수 비율만큼은 손금산입 검토대상에 포함 	예 / 아니오	○ 소득처분 적정여부 -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④ 법인업무용 자동차변호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고시 대상 법인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번호판 부착여부 - 법인 전용판 부착 대상 차량이 해당 번호판 미부착시 해당 차량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인정 * 취득가액 8천만원이상, 자가·리스·렌트(대여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한정) 	예 / 아니오	○ 업무용승용차 처분에 따른 매각손실 발생 여부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⑤ 업 무 사용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비치하였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관측 활동, 출·퇴근 등 실제 업무를 사용여부 	예 / 아니오	○ 매각손실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적정여부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업무사용비율을 적정하게 계산하였는지 여부 	예 /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계산 적정여부 -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유효계산 여부 - 해당 사업연도 1년 미만 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법령842② 규정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II. 신고도움서비스

04. 자기검증 서식

검토서식⑦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용 토지(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892의3 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법855의2②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 주택 및 별장(법법855의2①, 법령892의2②)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20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목 본래 용도 외 등으로 사용한 기간이 소유기간별로 아래 ①~②(또는③)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단, 법령892의11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법법 855의2②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 	예	아니오					
							비사업용 토지 소유기간 검토	3년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② 소유기간의 40(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예	아니오
								3년이상 ~ 5년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소유기간의 40(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예	아니오
								5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소유기간의 40(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등 양도소득(법법855의2⑥) = 양도금액 -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비영리법인이 1990.12.31.이전 취득한 토지는 법법855의2⑥ 참조 • 2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 시 법법855의2⑥에 따른 계산금액을 합산 	예	아니오
양도소득 귀속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령868① 규정을 준용 • 장기할부조건(법령868②)의 경우 법령868③ 규정에 의함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등 양도소득(법법855의2⑥) = 양도금액 -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비영리법인이 1990.12.31.이전 취득한 토지는 법법855의2⑥ 참조 • 2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 시 법법855의2⑥에 따른 계산금액을 합산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령868① 규정을 준용 • 장기할부조건(법령868②)의 경우 법령868③ 규정에 의함 	예	아니오		
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용 토지(10%) • 주택 및 별장(2021.1.1.이후 양도분 20%)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20%) • 미동기자산(40%)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3.16.~ 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자신의 양도소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법률 제9673호 부칙4조) • 토지를 취득 한 후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음(법법855의2③, 법령892의11③, 법칙846의2③) 	예	아니오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용 토지(10%) • 주택 및 별장(2021.1.1.이후 양도분 20%)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20%) • 미동기자산(40%)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3.16.~ 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자신의 양도소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법률 제9673호 부칙4조) • 토지를 취득 한 후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음(법법855의2③, 법령892의11③, 법칙846의2③) 	예	아니오					
적용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3.16.~ 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자신의 양도소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법률 제9673호 부칙4조) • 토지를 취득 한 후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음(법법855의2③, 법령892의11③, 법칙846의2③)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등 양도소득(법법855의2⑥) = 양도금액 -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비영리법인이 1990.12.31.이전 취득한 토지는 법법855의2⑥ 참조 • 2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 시 법법855의2⑥에 따른 계산금액을 합산 	예	아니오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법855의2③, 법령892의2④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미동기 토지 등의 양도 시는 과세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령868① 규정을 준용 • 장기할부조건(법령868②)의 경우 법령868③ 규정에 의함 	예	아니오					

II. 신고도움서비스

04. 자기검증 서식

검토서식⑧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중소기업 기준	[서식5]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감면율	2년 중기업	수도권 외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5%		
업종 기준	조특법37①1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예	아니오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5%		
								제조업 등	15%		
소기업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규모기준 이내인지 여부		예	1번 이동	감면대상 소득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처분손실 등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예	아니오	
			아니오	2번 이동							
감면율	1번 소기업	수도권 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10%		한도액	감면한도액을 초과하여 적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제조업 등		20%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5백만원 ② 그 밖의 경우 : 1억원			
	수도권 외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5%							
		제조업 등		30%							

II. 신고도움서비스

04. 자기검증 서식

검토서식⑨



통합고용세액공제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상자	•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업종 요건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 및 관광유희음식점업은 제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용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text{상시근로자 수} = \frac{\text{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기간의 개월 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r> <td>① 상시근로자 수</td> <td>명</td> </tr> <tr> <td>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td> <td>명</td> </tr> <tr> <td>③ 증 감(①-②)</td> <td>명</td> </tr> </table>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조특령 §23③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령§4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기령§1의2①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령§196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① 상시근로자 수	명	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명	③ 증 감(①-②)	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① 상시근로자 수	명							
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명							
③ 증 감(①-②)	명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기본 공제	•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고용증가인원 1인당 다음 금액을 공제하였는지 여부 (만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중소기업</th> <th rowspan="2">중견기업</th> <th rowspan="2">대기업</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그 외 상시근로자</td> <td>850</td> <td>950</td> <td>450</td> <td>-</td> </tr> <tr> <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td> <td>1,450</td> <td>1,550</td> <td>800</td> <td>400</td> </tr> </tbody> </table>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34세 이하로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450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450	1,550	800	400													
추가 공제	•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감소하지 않은 경우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였는지 여부 (만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중소기업</th> <th>중견기업</th> </tr> </thead> <tbody> <tr> <td>정규직근로자, 육아휴직 복귀자</td> <td>1,300</td> <td>900</td> </tr> </tbody> </table>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규직근로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규직근로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II. 신고도움서비스

05. 오류검증 항목

오류검증 항목

✓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발생가능한 오류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 → 홈택스 제공

 오류 검증 서비스('24년 42개 → '25년 45개)

구분	제공현황
오류	(외국법인 공제·감면 배제) 신고법인 구분이 외국법인지점(02)인 경우 공제·감면을 받을 수 없는 항목 검증
	(벤처 창업 감면율 과다 적용) 창업감면 계산서 상 ⑪ 창업벤처중소 기업을 선택한 경우 감면율을 50%만 적용하도록 검증
경고	(소기업 감면율 착오 적용) 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소기업 감면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검증

II. 신고도움서비스

05. 오류검증 항목

오류항목

✔ 오류 검증 항목 ('24년 17종 → '25년 19종, +2종), 미수정시 신고 불가

순번	오류 검증 내용	순번	오류 검증 내용
1	최저한세 계산 관련 서식 미제출, 최저한세율 착오 적용 여부 등	11	감면한도 초과, 한도 계산시 상시근로자 수 감소 미차감
2	중복 적용이 금지된 공제·감면세액을 중복으로 계상	12	신고대상자의 미환류소득 신고 누락, 전기 이월액과 당기 계상액 간의 차이 발생
3	공제·감면의 적용 한도 초과	13	사업연도 1년 미만시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 후 세율 적용 여부
4	공제·감면 적용 시 농어촌특별세 신고 적정 여부	14	사업연도개시일전 10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공제
5	투자세액공제 법인의 「투자자산명세서」 미제출	1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산출명세서 미제출
6	법령 일몰이 도래된 공제·감면 항목 적용	16	주식 등 양도에 따른 변동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명세서 미제출
7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 적용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17	최저한세 적용대상과 적용제외 공제감면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적용제외 공제감면 우선 적용 방지
8	일반(중견)기업이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 적용	18	신고법인구분이 외국법인지점(O2)인 경우 공제감면을 받을 수 없는 항목 검증
9	접대비 기본한도 과대 계상, 접대비 조정 명세서 미제출	19	창업감면 세액계산서 상 ⑩창업벤처중소기업을 선택한 경우 감면율을 50%만 적용 하도록 검증
10	법정 기부금의 손금한도 계산시 이월결손금 차감, 기부금 차기 이월액의 과다 계상 여부		

II. 신고도움서비스

05. 오류검증 항목

경고항목

✔ 경고 항목 ('24년 25종 → '25년 26종, +1종, 신고 시 참고 사항)

순번	경고 내용	순번	경고 내용
1	소규모 임대업 주업 법인, 승용차 일부기간 보유시 관련 비용 인정 한도 계산 미적정	15	당기순이익 과세대상 조합법인 등의 농특세 무신고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있는 법인 등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미제출	16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누락
3	보조금을 받은 법인의 손금산입명세서 미제출	17	벤처기업매등록법인이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감면적용시안내
4	중간예납의무 면제 소규모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부당공제	18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 법인이 아닌 경우 안내
5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된 법인의 중소기업 적용	19	법인세 정기신고당시삭제변경되어유효한업종만적용
6	당기순이익 과세대상 조합법인 등의 농특세 무신고	20	전산사후관리항목에해당하는사항은신중한검토를사전안내
7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누락	21	고용이증가한법인이고용증대세액공제를놓치지않도록안내
8	중소기업에적용대상외의업종이중소기업관련세액감면적용	22	자기자본 500억원 미만 법인의 경우 신고 의무는 없으나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해서는 신고 안내
9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해 감면기간(5년) 초과	23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계산 시 산재보험료율은 천분위이나 백분위로 착오 신고하는 것을 방지
10	지방이전 법인의 수도권 재이전시 감면세액의 추가납부 여부	2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받지 않도록 검증
11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 해야하나 감가상각비를 미기재	25	상시근로자 수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 가중치 적용받지 않도록 안내
12	농어업경영체매등록법인이농업회사법인등에대한감면적용	26	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소기업 감면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검증
13	수도권 내에 창업한 경우 50% 감면해야하나 100% 감면		
14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이감면기간(5년)을초과하여감면		

III. 신고내용 확인 사례

01. 신고내용확인 방향

02.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정사례

III. 신고내용 확인 사례

01. 신고내용 확인 방향

신고내용 확인 방향



신고 전

-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



신고 후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 ✔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정밀하게 확인**

III. 신고내용 확인 사례

02.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정 사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공제

수도권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주)△△

(주)△△의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올바른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국세청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부인

III. 신고내용 확인 사례

02.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정 사례



고용증대세액공제 과다 공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증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주)○○

(주)○○의 법인세 신고

상시근로자에 친족·임원을 포함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올바른 법인세 신고

상근로자에 친족·임원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 계산



국세청

상시근로자에 친족·임원 제외하고 재계산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부인

III. 신고내용 확인 사례

02.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정 사례



공제·감면 적용순서 착오로 농어촌특별세 신고 누락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은 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보다 위기지역 창업기업감면을 먼저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주)★★

(주)★★의 법인세 신고

- ①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 우선 적용하여 홈택스 전송
- ② 오류메시지를 반영하지 않고 공제순서를 임의 변경 신고

올바른 법인세 신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을 우선 적용



국세청

- (참고) 홈택스 오류 검증 서비스를 통해 자기검증 서비스 제공



오류메시지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코드와 최저한세 적용제외 감면코드는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세액을 재계산
농어촌특별세 수정신고**

III. 신고내용 확인 사례

02.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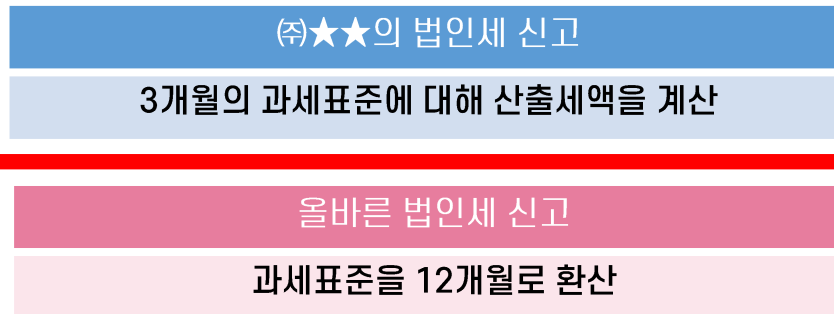


사업연도 1년 미만인 법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환산 누락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은 '23. 10월에 설립된 신설법인으로서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주)★★



국세청



$$\text{산출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12 / \text{사업연도월수}) \times \text{세율} \times \text{사업연도월수} / 12$$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출세액 재계산

III. 신고내용 확인 사례

02.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정 사례



세액공제 이월액 과다 신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은 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해당연도에 발생한 R&D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주)◇◇

(주)◇◇의 법인세 신고

- ① 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로 법인세 환급
- ② 당해 연도 법인세 신고시 착오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 적용

올바른 법인세 신고

당해 연도에 발생한 R&D세액공제만 적용



국세청

이중으로 공제받은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법인세 재계산

III. 신고내용 확인 사례

02.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정 사례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함



**고가로 매입한 특허권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하고
양수대금과 상계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 처분**

III. 신고내용 확인 사례

02.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정 사례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부당 적용

고용위기지역에서 선박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주)☆☆은 '21년 법인 설립 후
위기지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기지역 창업중소기업감면 부인**

III. 신고내용 확인 사례

02.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정 사례



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은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과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주택무상임대 시가 = [해당자산의 시가 * 50% - 그 자산의 제공으로 받은 전세금(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주택유지비용과 주택 임대료 시가 상당액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

III. 신고내용 확인 사례

02.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정 사례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지급 등

(주)★★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법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비용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대표이사 배우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 자금 유출



(주)★★

(주)★★의 법인세 신고

원천세 허위 신고 후 인건비 처리
해외 카드사용내역 비용처리

올바른 법인세 신고

허위 인건비 및 법인카드 사용금액
손금불산입,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국세청

**가공 계상한 인건비·법인카드 사용금액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 처분**

III. 신고내용 확인 사례

02.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정 사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

(주)★★은 국외 지배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후 전액 지급이자로 비용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참고)

- (순이자비용)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지급이자 등의 총액 -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익 총액(음수인 경우 "0")
- (조정소득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세무상 감가상각비 + 국외 특수관계인 관련 순이자비용

순이자비용 중 조정소득금액의 30% 초과 지급액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감사합니다.



국세청 법인세과

